

보험사용/고객교부 불가

## 보험계약 완전판매 체크리스트(변액)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준수 여부를 아래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 후 반드시 확인(V체크)하여야 합니다.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무)베리굿(Vari-Good)변액저축보험B2101(거치형)	6697127200200	2022년 12월 22일	박병진	박병진

구분	점검항목	확인(V)	
보험계약 중요내용 설명	공통	○ 해당 금융상품이 펀드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이라고 설명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 해당 보험의 보험사명, 상품명을 설명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 해당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보험약관, 상품설명서를 전달하고 중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 다음의 상품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까? •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해약환급금, 연금액 등이 변동된다는 내용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 해당 보험의 주계약 및 특약의 보장내용(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과 보험금 지급시 제한 조건(지급한도, 면책, 감액 조항등)을 설명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 고객의 과거병력이나 건강상태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향후 보험금 지급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 계약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까? • 계약 청약을 철회/취소 할 수 있는 권리 * 청약철회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품질보증해지(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미 설명, 청약서 자필서명 미실시):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input type="checkbox"/>
		○ 보험모집자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 등) 권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변액	○ 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적합성 원칙 등) 사항을 이행하였습니까?
보험계약 중요내용 이해여부 확인	○ 계약자의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이해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으셨습니까? (서명, 녹취 등)	<input type="checkbox"/>	
계약자 보호	○ 고령층(만 65세 이상) 보험계약 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에 대해 안내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 보험금 청구시 지정대리인 청구제도에 대해 안내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보호	○ 장애인 고객 응대지침(매뉴얼)을 준수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분쟁조정 절차	○ 가입한 보험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설명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2022년 12월 22일

모집인 성명 : \_\_\_\_\_서명

증권번호:6697127200200

## 보험계약 청약서(별지)

■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

-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뺀 금액을 일반계정에서 분리하여 특별계정(펀드)으로 운용하는 보험입니다.
  - 특별계정(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투자 손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매일 변동되며, 원금(이미 납입한 보험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운용에 따른 운용보수를 별도로 받습니다.
  - 가입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공제 및 그간의 특별계정 운용보수, 보증비용 차감 등으로 일반적으로 원금보다 작습니다.
  - 계약자가 가입시 최저 보증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재원(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 이상을 최저한도로 지급 보증합니다.
  - 보험회사는 최저보증(최저계약자적립액, 최저사망보험금 등)에 따른 보증비용을 받으며, 중도해지시에는 최저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은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자가 펀드를 선택·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보험사의 영업정지, 파산 등의 사고 발생시 동 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보증기능을 선택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동 법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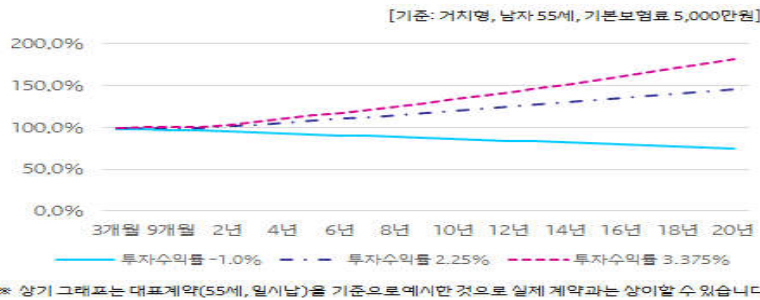
■ 보험료 세부내역 안내

21세 남자, 납입보험료 10,000만원(주계약보험료 10,000만원), 납입기간 일시납

납입보험료		총회
주계약보험료 (10,000만원)	투자재원 (펀드투입)	99,163,650(99.2%)
	사업비	836,000(0.8%)
	위험보험료	350(0.0%)

※ 위험,저축보험료 등은 가입 이후 경과기간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계약자가 납입하는 영업보험료는 납입기간중 동일합니다.), 이 계약의 보험료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서와 함께 제공받은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기간별 해약환급률 예시표



※ 상기 그래프는 대표계약(남자 55세, 일시납, 일시납보험료 5천만원, 종신)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펀드변경 방법 및 절차 안내

-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자가 펀드를 선택·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펀드변경 방법 및 절차 안내

**【 모바일 창구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흥국생명]을 검색>모바일창구 APP 다운  
 로그인 > 계약내용변경 > 변액보험 펀드변경 > 적립비율변경, 투입비율변경 등 선택하여 실행

**【 사이버 창구 】**  
 회사 사이버창구(www.heungkuklife.co.kr) 접속  
 로그인 > 계약내용변경 > 변액보험 펀드변경 > 적립비율변경, 투입비율변경 등 선택하여 실행

**【 콜센터 】**  
 콜센터(☎1588-2286) 또는 변액상품 전용 콜센터(☎1877-6709) 전화  
 고객이 전화로 펀드변경 신청시 전문 상담사가 상담 진행

**【 금융플라자/지점 】**  
 금융플라자/지점 방문시 신청서 작성을 통해 펀드변경신청(방문가능 창구는 홈페이지 참조)

증권번호:6697127200200

■ 수수료안내표  
 기본비용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계약체결시	1차월 : 기본보험료의 0.8360% (836,000원) 2차월~15차월 : 기본보험료의 0.1160% (116,00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1차월 : 기본보험료의 0.0000% (0원) 2차월 이후 : 기본보험료의 0.0130% (13,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04% ~ 0.0412% (350원 ~ 41,170원)
보증비용	만기보험금 보증	매월	해당사항 없음
특별계정 운용비용	특별계정 운용·수탁비용	매일	채권형 : 펀드적립액의 0.001008% (연 0.368%) 채권혼합형 : 펀드적립액의 0.001200% (연 0.438%)
			사유발생시
	기초펀드의 보수·비용	매일	채권형 : 펀드적립액의 0.000000% (연 0.000%) 채권혼합형 : 펀드적립액의 0.000110% (연 0.040%)
보증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매월	계약자적립액의 0.00417% (연 0.05%)
해약공제	해약에 따른 패널티	해약시	아래도표 참조

※ 수수료안내표의 세부내용은 이 청약서와 함께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자 :                      (인)

증권번호:6697127200200

## 금융소비자 우선 설명 확인서

본 확인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 구매권유(만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에게 손실위험 등 상품설명 강화 및 예금자보호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해당 칸에 √ 체크)

동의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십니까?

만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기타 우선 설명 희망자

### \*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보험상품의 거래)

- 보험상품은 은행의 예적금과는 달리 장기 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납입하신 보험료는 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후 적립보험료로 운용됩니다.

-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액보험은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 예금자보호대상 상품 및 변액보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 예: 최저계약자적립액, 최저사망적립금, 실적배당종신연금일 경우 보호한도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 들으셨습니까?

(자필기재) 우선적으로 설명들었음

미동의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은 상품의 주요 특성과 함께 「일반적인 판매 절차에 따라 설명」 됨을 안내 받으셨습니까?

(자필기재) 안내받았음

20      년      월      일

계약자 :

(인 또는 서명)

※ 본 확인서 원본 보험사 송부\_1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2-BB1-000010호(2022.12.08)

증권번호:6697127200200

※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 (무)베리굿(Vari-Good)변액저축보험B2101 (거치형)

박병진 님을 위한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p><b>예금자보호</b></p> <p>최저보증 보험금만 보호 [1인당 최고 5천만원]</p>	<p><b>예금자보호</b></p> <p>예금보험공사 바보호</p>	<p><b>저축성보험</b></p> <p>예적금, 펀드와 다름</p>	<p><b>실적배당형</b> [원금손실가능]</p> <p>수익률 변동</p>
<p><b>청약철회기간</b> [청약 후]</p> <p><b>30일</b> 이내</p>	<p><b>원금도달기간</b> [2.25% 가정]</p> <p>약 <b>2</b> 년 [납입보험료 기준]</p>	<p><b>해약환급률</b> [2.25% 가정]</p> <p>3년 : 103.9% 5년 : 108.4% 7년 : 112.9% [납입보험료 기준]</p>	<p><b>변액보증</b> [사망사고 발생시]</p> <p>최저사망 보험금 <b>보증</b> [납입보험료 100%]</p>

※상기 아이콘 특성정보는 상품특성을 도식화하기 위해 변동가능한 가정이 사용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흥국생명보험(주)

- 고객님께서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이 보험상품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되는 변액 저축성보험으로, 보험가입시 정해진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일반 저축성보험과는 다릅니다.

구분	일반 저축성보험	변액 저축성보험
사망보험금	보험가입시 정해진 금액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
해약환급금	경과기간에 따라 증가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
원금보장여부	원금보장	원금손실가능
예금자보호 여부	보호	미보호

■ 이 보험상품은 변액저축보험으로, 펀드상품이 아닙니다.

구분	펀드	변액저축보험
가입목적	단기~중기의 자산증식	중기~장기 자산증식, 노후대비
사업비 구조	적음	많음(계약초기)
보장기능 유무	없음	있음 (대신 위험보험료 차감)

□ 민원·분쟁·상담이 많은 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과거 질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과거 질병의 진단 및 치료사실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 외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축보험의 공제금액에 관한 사항

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투자)되지 않습니다.

- 저축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또는 투자됩니다.
- 이러한 비용·수수료 등으로 인해 저축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초기에 해지한다면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장기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보험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 원금손실에 관한 사항

변액보험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매일 변동되며, 운용실적이 악화될 경우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계정이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계약자에게 배분하기 위해서 일반계정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및 운용하는 계정으로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여러 개의 펀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본문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중도 해지 시(예 : 48개월 간 보험료 1,440만원 납입)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투자수익률로 부리한 금액(예 : 1,379만원)을 돌려드려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에 소용되는 비용
- ※ 위 예시액은 가상상품 및 가상고객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제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예시는 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변액보험 유의사항]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펀드로 운용되지 않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 특별계정 운용보수, 최저보증비용\* 등이 차감된 금액에 투자수익률을 반영하여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계산됩니다.
- \* 최저보증옵션에 따라 보증비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가입한 최저보증옵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사망보증옵션 유의사항]  
 변액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에는 최저사망보증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보증금액은 사망보험금에만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이 상품의 해약환급금 등 지급금은 '예금자보호법' 에 의해 보호받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상품, 법인보험계약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설명서]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예금자보호제도

[보험료 감액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보험료 감액은 경제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 보험료를 감액하더라도 사업비\*는 보험료가 감액된 비율만큼 줄지 않아, 최초 가입 시 안내받은 만기(해약)환급률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 \* 해당 보험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드는 비용 등
- ※ 보험료 감액을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보험회사 등에 불이익 사항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해사고에서 보장이 제외되는 사항]  
 재해보험금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등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사고에 대하여만 지급됩니다.

-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재해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관] 별지 "재해분류표"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구분	보험회사	외부기관			
상담·민원	전화상담 (1588-2286)	생명보험 협회	콜센터	02-2262-6565	
			인터넷 상담	<a href="https://consumer.insure.or.kr/counselCase/qna/list.do">https://consumer.insure.or.kr/counselCase/qna/list.do</a>	
분쟁조정	누리집 (www.heungkuklife.co.kr)	금융 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e-금융 민원센터	<a href="https://www.fcsc.kr/">https://www.fcsc.kr/</a>	
		한국 소비자원	콜센터	국번없이 1372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2-BB1-000010호(2022.12.08)

증권번호:6697127200200

(무)베리굿(Vari-Good)변액저축보험B2101(거치형) 상품설명서

■ 보험가입조건

상품명	(무)베리굿(Vari-Good)변액저축보험B2101(거치형)				
피보험자	박병진	생년월일	02.01.15	가입나이	21세(남자)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일시납	납입방법	일시납
보험가입금액	10,000만원	합계보험료	100,000,000원	실납입보험료	100,000,000원

채권형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주식형	글로벌혼합형	베스트리서치 아시아혼합형	인베스트 브릭스주식형	인베스트 동유럽주식형	단기채권형
50%	50%	0%	0%	0%	0%	0%	0%	0%
Commodity 재간접혼합형	삼성그룹주 주식형	글로벌하이 일드채권형	배당주주식형	베리굿자산 배분형60	베리굿자산 배분형80	글로벌주식형	선진국주식형	이머징주식형
0%	0%	0%	0%	0%	0%	0%	0%	0%
중국본토 주식형	글로벌채권형	선진국채권형	이머징채권형	글로벌 멀티인컴형	인덱스주식형	중소형주식형	베리굿자산 배분형100	글로벌 신성장 주식형
0%	0%	0%	0%	0%	0%	0%	0%	0%
글로벌리츠 펀드	미국주식형 펀드	총 합						
0%	0%	100%						

■ 펀드투입금액 등 납입비중

21세 남자, 납입보험료 10,000만원(주계약보험료 10,000만원), 납입기간 일시납

납입보험료		초회
주계약보험료 (10,000만원)	펀드투입금액*	99,163,650(99.2%)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836,000(0.8%)
	위험보험료	350(0.0%)

\* 펀드투입금액 :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주계약(보장내용)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1,000 만원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

- ※ 계약소멸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 계약자적립액은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액도 변경됩니다.
- ※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거치형에 한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 1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시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증권번호:6697127200200

■ 해약환급금 예시

구분				투자수익률 -1.0%가정시 (순수익률 -1.05%)		투자수익률 2.25%가정시 (순수익률 2.2%)		투자수익률 3.375%가정시 (순수익률 3.325%)	
경과 기간	도달 나이	납입보험료	특별계정 투입금액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21	100,000,000원	98,904,950	98,644,083원	98.6%	99,444,931원	99.4%	99,717,700원	99.7%
6개월	21	100,000,000원	98,516,900	97,996,875원	98.0%	99,597,691원	99.6%	100,145,885원	100.1%
9개월	21	100,000,000원	98,128,850	97,351,372원	97.4%	99,751,284원	99.8%	100,577,584원	100.6%
1년	22	100,000,000원	97,740,800	96,707,569원	96.7%	99,905,714원	99.9%	101,012,826원	101.0%
2년	23	100,000,000원	97,232,360	95,188,457원	95.2%	101,585,175원	101.6%	103,847,909원	103.8%
3년	24	100,000,000원	97,071,800	94,229,819원	94.2%	103,856,452원	103.9%	107,335,676원	107.3%
4년	25	100,000,000원	96,910,880	93,080,884원	93.1%	105,977,307원	106.0%	110,738,986원	110.7%
5년	26	100,000,000원	96,749,720	92,243,769원	92.2%	108,444,555원	108.4%	114,555,155원	114.6%
6년	27	100,000,000원	96,588,200	91,115,080원	91.1%	110,665,690원	110.7%	118,197,781원	118.2%
7년	28	100,000,000원	96,426,560	89,998,118원	90.0%	112,935,545원	112.9%	121,961,342원	122.0%
8년	29	100,000,000원	96,264,680	88,892,640원	88.9%	115,255,068원	115.3%	125,849,733원	125.8%
9년	30	100,000,000원	96,102,560	87,798,525원	87.8%	117,625,352원	117.6%	129,867,104원	129.9%
10년	31	100,000,000원	95,940,320	87,215,773원	87.2%	120,547,634원	120.5%	134,517,863원	134.5%
15년	36	100,000,000원	95,127,080	81,942,399원	81.9%	133,537,141원	133.5%	157,521,454원	157.5%
20년	41	100,000,000원	94,305,920	76,932,257원	76.9%	148,010,656원	148.0%	184,601,585원	184.6%
30년	51	100,000,000원	92,589,320	67,599,505원	67.6%	182,056,790원	182.1%	253,959,083원	254.0%
40년	61	100,000,000원	90,647,240	58,985,832원	59.0%	224,126,719원	224.1%	349,876,064원	349.9%
50년	71	100,000,000원	88,069,280	50,625,180원	50.6%	275,722,540원	275.7%	482,155,164원	482.2%

증권번호:6697127200200

- ※ 상기의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 ※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펀드)으로 투입·운용되고 특별계정(펀드)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특별계정적립액에서 보증비용이 차감됩니다. 상기 순수익률은 보증비용 등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입니다.
- ※ 특별계정(펀드) 투자수익률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계산되며 특별계정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 비용은 매일 차감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실제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저보증미 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예시된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은 상한 또는 하한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상기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입니다.
- ※ 상기예시금액의 투자수익률은 -1.0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25% 및 동 이율의 1.5배인 3.375%를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 입니다.
-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되기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 변액보험 특별계정(펀드)의 수익률 및 자산구성내역 등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공시실 ⇒ 상품비교공시 ⇒ 변액보험”을 통해 비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계약의 중도해지시 해지 시점의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은 계약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상기 예시된 금액은 거치형에 한하여 연계약해당일 전일 기준의 해약환급금에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하는 해당 연도의 장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연계약해당일 기준)을 포함한 금액이며, 연계약해당일 이전에 해지시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예시그래프



※ 상기 그래프는 대표계약(남자55세, 일시납, 일시납보험료 5천만원, 종신)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증권번호:6697127200200

■ 수수료 안내표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계약체결시	1차월 : 기본보험료의 0.8360% (836,000원) 2차월~15차월 : 기본보험료의 0.1160% (116,00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1차월 : 기본보험료의 0.0000% (0원) 2차월 이후 : 기본보험료의 0.0130% (13,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04% ~ 0.0412% (350원 ~ 41,170원)
보증비용	만기보험금 보증	매월	해당사항 없음
특별계정 운용비용	특별계정 운용·수탁비용	매일	채권형 : 펀드적립액의 0.001008% (연 0.368%) 채권혼합형 : 펀드적립액의 0.001200% (연 0.438%)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사유발생시	채권형 : 펀드적립액의 연 0.010% 채권혼합형 : 펀드적립액의 연 0.020%
	기초펀드의 보수·비용	매일	채권형 : 펀드적립액의 0.000000% (연 0.000%) 채권혼합형 : 펀드적립액의 0.000110% (연 0.040%)
보증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매월	계약자적립액의 0.00417% (연 0.05%)
해약공제	해약에 따른 패널티	해약시	아래도표 참조

증권번호:6697127200200

1.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약·결제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년도(2021.01.01~2021.12.31)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함.
2. 기초펀드보수·비용 : 다른 집합투자증권(기초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수 및 비용을 직전년도(2021.01.01~2021.12.31)의 투자 비용을 기준으로 추정함.
3. 특별계정운용수수료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를 말하며, 상기 포함된 비용을 최고한도로 하여 실제비용이 부과됨.
4. 상기 특별계정 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기초펀드보수·비용은 해당 특별계정(펀드)적립액에서 차감되며 특별계정(펀드)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 해약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해약공제금액(만원)	0	0	0	0	0	0	0
해약공제비율	0.0%	0.0%	0.0%	0.0%	0.0%	0.0%	0.0%

주1) 해약공제금액 : 경과기간별로 계약해지시 실제 공제하는 금액

주2) 해약공제비율 : 이미 납입한 보험료(할인전보험료 기준) 대비 해약공제금액의 비율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없음
펀드변경수수료	펀드변경에 따른 비용	펀드변경시	없음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없음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2-BB1-000010호(2022.12.08)

증권번호:6697127200200

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 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해당 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

※법령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주의

- 보험 상품명
- 법령위반 사실(해당 사항에 체크(√))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합리적·객관적 근거(증빙·참고자료 첨부必)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절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돌려드립니다.

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면제된 보험료는 제외. 또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1. 보험계약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

가. 서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한(서명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

가.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고지의무

형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료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효과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총당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2년(144회납입)이후부터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납입 일시중지'상태가 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기본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납입 일시중지'상태일 때 회사는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납입 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공제하며,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를 준용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험료 납입유예(적립형에 한함)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다만,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납입 기간의 50%)이상 지난 계약에 대해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월단위로 기산되며,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포함)납입이 있을 경우 또는 총 납입유예기간 36개월 초과시 자동 종료**됩니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만큼 보험료 납입기간이 연장됩니다.(다만, 납입기간 종료시점은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 납입후 계약관리비용 및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없을 때** 보험료 납입유예는 중단되며, 해당월의 **보험료를 계약해당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2-BB1-000010호(2022.12.08)

증권번호:6697127200200

3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의 해지·해제·무효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사유에 의한 해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의 해제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의 무효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면제된 보험료는 제외. 또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또는 초과한 계약

나.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이 보험의 최저사망 보장부분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이며, 적립부분은 특별계정운용실적(투자수익율)에 따라 변동됩니다.

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등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70%한도 내에서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이 적립형은 기본보험료의 300%와 3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 거치형은 일시납보험료의 3%와 2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 잔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용되는 이자만큼 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마. 상품별 특이사항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보험으로 계약자적립액에 적용되는 특별계정운용실적은 매일 변동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립보험료 납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에 추가납입 하실 경우 사업비 절감효과로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것보다 해약환급률 및 만기환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추가납입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는 금액이 기본보험료 납입시보다 적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적립되므로 환급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추가납입 한도 및 횟수, 납입가능 기간 등은 해당 상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부 방법은 무통장·가상계좌 입금, 즉시이체, 자동이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2-BB1-000010호(2022.12.08)

증권번호:6697127200200

[저축성보험 신규가입과 기존계약의 추가납입 활용 시 장·단점 비교]

구분	기존계약 외 신규가입	기존계약의 추가납입 활용
장점	- 계약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상품가입 가능 - 현재 재무상태에 맞는 가입플랜 재설정 가능	- 신규가입 대비 사업비가 저렴하여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점	- 기존계약의 추가납입 활용 대비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기존상품의 운용방법 내에서만 활용 가능 - 새로운 상품의 서비스 기회 없이 기존상품의 환급률 개선효과만 제공

바.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사망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장애보험금, 입원보험금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도 수익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중도보험금 및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기타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 \* 배우자는 위의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보험수익자 지정 방법 안내

·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 계약자, (중)피보험자, 변경후 수익자 각각 신분증, 피보험자와 변경후 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 등

\* 타인으로 변경 시 피보험자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계약변경동의서(인감날인)

·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모집자나 콜센터(1588-2286)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heungkuklife.co.kr)를 통해 문의가능

사. 연금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 연금전환특약은 주계약 가입시점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이 특약으로의 전환이후 전환 전 계약으로의 소급은 불가합니다.
- 무배당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하실 경우 1종(최저계약자적립액(GMAB)보증형)과 2종(최저계약자적립액(GMAB)미보증형) 중 선택하여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1종(최저계약자적립액(GMAB)보증형)	2종(최저계약자적립액(GMAB)미보증형)
보증유무	최저사망보험금(GMDB)	○	○
	최저계약자적립액(GMAB)	○	X
보증비용	최저사망보험금(GMDB)	특별계정적립액의 연0.05%	특별계정적립액의 연0.05%
	최저계약자적립액(GMAB)	특별계정적립액의 연0.5%	미부과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실제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기납입보험료보증)	실제 계약자적립액

※ 2종(최저계약자적립액(GMAB)미보증형)의 경우,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2-BB1-000010호(2022.12.08)

증권번호:6697127200200

아.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납입면제 없음

자.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거치형에 한함)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거치형 계약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합니다.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 보너스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0.2%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0.3%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0.5%

- 상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 합계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만, 일시납 기본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를 적용합니다.
-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 1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망시까지 적합한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아래의 유의사항은 보험계약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지급에 관한 약관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시 인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대비 중도인출금액의 비율만큼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감소됩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는 실재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 안내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일 다음 달부터 약 1년간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계약 전 알릴 의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사례

상해보험을 가입한 A씨는 운동 중 무릎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보험가입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이 한참 지난 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떠올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기간을 경과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사례

A씨는 B씨의 자필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였고, 이후 B씨가 사망해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무효처리 및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됨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2-BB1-000010호(2022.12.08)

증권번호:6697127200200

5 보험금 청구·지급절차

① 보험금 청구	② 현장확인 여부 심사	③ 손해사정/사고 조사 (필요시)	④ 보험금 청구 진행결과 안내	⑤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⑥ 보험금 지급
----------	--------------	--------------------	------------------	----------------	----------

- ① 보험금 청구 : 보험 계약내용 확인/구비서류 확인 후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 등으로 접수, 보험사는 접수번호, 담당자명 등을 SMS로 통지  
 ※ 콜센터 등을 통해 보험 계약내용 확인/구비서류 확인
- ② 현장확인 여부 심사 : 심사 및 조사 여부 검토
- ③ 손해사정/사고조사 : 보험금 또는 손해액을 산정
- ④ 보험금 청구 진행결과 안내 : 고객이 선택한 방법(서면, SMS, 이메일 등) 접수번호, 청구 사유 및 사고 내역 등의 정보 안내
- ⑤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 청구 서류 및 조사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 ⑥ 보험금 지급 : 지급 내역 안내 및 보험금 지급

6 기타 금융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손해사정사의 선임 관련 고객의 권리사항 안내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로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선임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 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손해사정사 선임시 비용 주체>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 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 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합니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 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가입자가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의료심사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보험금 지급 예정일은 통상 3영업일 이내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 소요됨을 알려 드리며 지급기일(조사 시 10일)내 미지급시 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이차계산법에 의한 소정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가지급제도 신청은 당사 콜센터(☎1588-2286)로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2-BB1-000010호(2022.12.08)

증권번호:6697127200200

7 |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퇴직보험예외)에는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상품별 주요민원사항

- 민원사례1

유형	해약환급금관련
내용	<p>자녀 결혼자금을 위해 목돈을 마련코자 저축성보험을 알아보던 A고객은 지인이었던 판매인 B씨로부터 당사의 ○○보험을 가입권유 받음</p> <p>매월 ○○만원씩 5년만 납입하면 5년 뒤에는 원금 뿐만 아니라 은행 수익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A고객은 청약서에 서명함</p> <p>A고객은 청약서 서명 이후 상품설명서 및 증권, 약관 등 중요서류를 모두 수령하였으나 판매인 B씨의 설명만을 믿고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며, 가입 이후 자동이체를 통하여 보험료를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함</p> <p>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자녀결혼 자금으로 사용코자 해지시 수령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최초 안내받았던 내용과는 달리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함</p>
유의사항	<p>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p>

- 민원사례2

유형	변액보험상품의 투자손실 관련
내용	<p>35세 남자인 C고객은 최근 저금리에 대한 불안 등 투자에 대한 고민 중 지인의 소개로 모집인 B씨를 만나 상담을 받게 됨.</p> <p>모집인 B씨에게 본인이 원하는 상품에 대해 상담 후 ○○변액보험 가입을 제안받았고, 상품 가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가입함.</p> <p>청약서에 서명 이후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납입되었으며 약관, 증권,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정상적으로 전달받았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수개월이 경과하여 우연히 청약관련 중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보험 상품이었고 원금도 보장이 안되는 상품임을 확인함</p> <p>가입 당시 투자상품으로 권유받았으며 보험이라는 설명도 없어 설계사를 신뢰하고 가입하였으나 수익률이 과장되게 설명되어 오해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p>
유의사항	<p>보험회사의 변액보험상품은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증가하나,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됨</p>

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 및 외부기관(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2-BB1-000010호(2022.12.08)

증권번호:6697127200200

8

기타 유의사항

가. 보험모집자의 업무범위

- ①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며, 보험판매인은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서면, 녹취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수령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판매인에게 구두로 계약 전 알릴 사항을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③ 보험회사는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료를 납입받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판매인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나. 보험계약 전환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해약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라.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환급금보다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마.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이자 자동이체 관한 사항

- 제2회 이후 보험료 자동이체 계약건 중 잔고 부족으로 납입 희망일에 이체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인출일(5,10,15,20,25,말일)에 계속하여 인출됩니다. (연체일 경우 2개월분 인출)

바.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형법」상 금지된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실을 당사 '보험사고특별조사파트'로 제보하여 주시면 포상 기준에 따라 포상합니다.

사.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사항

-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왜 지정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은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발생시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여 두시면 대리청구인이 가입자(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 가입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치매보험금 청구가 곤란
-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문의  
가입하신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연락처 : 1588 - 2286(방카콜센터)

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금강원 통합콜센터 1332)에서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 등에게 금융계좌 보유 유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법원으로부터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받은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 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2-BB1-000010호(2022.12.08)

증권번호:6697127200200

자.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이하 "보험가입자 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가입내역을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조회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차. 기타 유의사항

-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조건으로 보험판매를 할 수 없고, 타 보험회사의 유사상품 3종 이상을 필수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은행의 지정된 보험판매자 만이 보험판매가 가능하고, 전화 등 고객과 비대면 방식의 보험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변액보험에 관한 사항

가. 변액보험의 투자형태 및 구조

- 변액보험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자금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분배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입니다.  
 ※ 변액보험 특별계정(펀드)의 수익률 및 자산구성내역 등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 → 변액보험"을 통해 비교·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변액보험에 관한 중요사항

-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최저보증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 이 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로 투입되어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 등을 차감한 보험료가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됩니다.
-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에서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적립액을 제외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중도에 인출이 가능하며, 중도 인출시 펀드에 투자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며, 펀드변경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자가 펀드를 선택, 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등 수익을 제고를 한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펀드변경 방법 및 절차 안내  
 [모바일 창구]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흥국생명]을 검색하여 모바일창구 어플리케이션 다운  
 - 계약자가 로그인 > 계약내용변경 > 변액보험펀드변경 메뉴에서 변경  
 - 보안카드 또는 OTP필요  
 [사이버 창구]  
 - 사이버창구(www.heungkulife.co.kr) 접속  
 - 계약자가 로그인 > 보험계약정보 > 계약내용변경 > 변액보험펀드편경신청 메뉴에서 변경  
 - 보안카드 또는 OTP필요  
 [콜 센터]  
 - 콜센터[1588-2286] 전화  
 - 계약자가 펀드변경 신청시 상담사가 상담 진행하여 변경  
 [내방]  
 - 금융플라자 및 지정 내방  
 - 계약자가 펀드변경신청서 작성하여 변경(신분증 지참)

다. 변액보험 주요내용

- 변액보험 계약은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특별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이 매일 변동됩니다.
- 이 상품은 단기보유목적의 투자신탁상품(적립식 펀드 등)이나 예금, 적금이 아니라, 보장기능이 있는 장기투자 목적의 보험상품입니다.
-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 중 수수료 안내표에 기재된 보험관계비용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펀드)에 투자, 운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르기 위해서는 펀드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기간 소요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단, 약관에서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은 보호대상임)
- 이 보험계약은 최저 보증이율이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받고 그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2-BB1-000010호(2022.12.08)

증권번호:6697127200200

10

보험차익 세제 관련 사항(소득세법시행령 제 25조)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래와같이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세법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및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 및 지침 등에 따라 상세 조건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1) 5년납 이상 월납 계약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③항 제2호]

-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이미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함)이 150만원 이하일 시,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 단, 6개월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선납(잔여보험료 전액 일시납입 포함)하거나,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 또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3)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며,
-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것"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1.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2.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공제금이 없을 것

(2) 일시납, 5년납 미만 월납 계약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③항 제1호]

-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공제계약』 중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계약과 이 계약의 납입할 보험료 총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면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 단,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계약은 10년 이상 유지하여도 과세되며, 총 합계 보험료가 1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됨

\* 위의 『보험/공제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①항 제1호 및 제②항에 따른 저축성 보험/공제계약을 말하며,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클 수 있는 보장성 보험도 포함

< 1억원 합산 대상 계약 >

- 일시납, 2/3/6개월납, 연납, 일시납+월납 등 월납이 아닌 계약
- 5년납 미만의 월납
- 월납(5년납 이상)으로 가입하였더라도 6개월을 초과하여 선납하거나,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을 한 계약,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균등하지 않는 계약

※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 명의 변경시에는 변경일로부터 (1) 및 (3)의 비과세 기간(10년)을 다시 산정합니다. (단, 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과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2-BB1-000010호(2022.12.08) 증권번호:6697127200200

계약자 주요내용 확인서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하며,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아래 각 확인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히 설명 들으신 후, 확인사항에 대하여 "예, 아니오"란에 체크(√) 표시 후 자필서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주계약·특약별로 <b>보험료, 보장하는 범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면책) 및 기간</b> 을 자세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특약의 가입 개수에 따라 납입하는 <b>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기간도 주계약·특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b>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청약서 상 <b>질문사항</b> 에 대해 <b>사실대로 답하지 않거나</b> , 보험회사에 <b>알리지 않을 경우</b> 계약 해지 등 <b>불이익</b>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보험계약 만기 또는 해약 시 납입하신 보험료 전부를 환급금으로 돌려준다고 안내 받으셨나요, <b>사업비 차감</b> 등으로 인해 <b>납입 보험료 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고</b> 안내 받으셨나요? <input type="checkbox"/>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input type="checkbox"/> 보험료 전액을 환급
4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일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면책), 보험회사는 일정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납입최고)를 하며, 동 기간 내에 <b>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b>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는(강역) 경우, 줄이는 부분만큼 해지시 차감되는 금액이 있어 <b>손실</b>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보험계약자는 <b>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수익자)을 지정</b>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수익자) 지정방법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청약철회 기한에 관한 사항은 모집자의 설명을 듣고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b>(15일) 이내</b>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b>청약을 철회</b> 할 수 있습니다.
8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에서 <b>사업비</b> 등을 제외한 금액만 적립하여 적용이율로 부리하는 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는 <b>다른 상품</b> 입니다. 이 상품의 사업비 금액, 적용이율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이 상품은 투자성격이 있는 보험상품으로, 투자실적에 따라 <b>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줄어 들 수도</b>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	이 상품은 보험료 중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등을 빼고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고객님의께서는 납입하신 보험료 전부를 투자한다고 안내 받으셨나요, 계약체결비용 등을 빼고 투자한다고 안내 받으셨나요? <input type="checkbox"/>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을 빼고 펀드에 투자 <input type="checkbox"/> 보험료 전부를 펀드에 투자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판매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상품설명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옅고 크게 밑줄친 내용에 판매인 및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인)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인 확인 ]

●보험판매인 이기정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박병진 님에게 설명하고, 이 상품설명서,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22.12.22. 판매인 (인/서명)

[ 보험계약자 확인 ]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 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원금손실의 가능성 있음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비 에 관한 주요사항 설명들음

사업비(부가보험료)란? 보험상품은 장기적인 상품으로 회사에서 보험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 을 말합니다.

●보험판매인 이기정(으)로부터 상품설명서,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교부받아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12.22.보험계약자 (인/서명)/친권자 (인/서명)/친권자 (인/서명)

6697127200200

## 보험차익 세제 관련 안내 확인서(법인계약 제외)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기준을 아래와 같이 요약 안내하오니, 고객님께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와 '상품설명서의 보험차익 세제관련 사항'의 보험차익 비과세 사항을 확인하여 세제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사항은 세법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관련세법조항은 기획재정부 및 과세당국의 유권해석 및 지침 등에 따라 상세조건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보험차익 세제관련 요약 내용
보험료 납입기간 5년이상 월납계약	<input type="checkbox"/>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이미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함)이 150만원 이하일 시,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 단, 6개월초과 보험료를 선납하거나,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기본보험료 1배이내 증액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과세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1.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손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2.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공제금이 없을 것
일시납, 연납 또는 납입기간 5년미만 월납계약	<input type="checkbox"/> 계약자가 이미 가입한 「보험/공제계약※」과 이 계약에서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이 계약은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되나, 1억원 초과시에는 10년이상 유지하여도 과세됨  ※ 「보험/공제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①항 제1호 및 제②항에 따른 생명/손해 보험사, 수협/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한 모든 저축성 보험/공제계약을 말하며,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클 수 있는 보장성보험도 포함
기타 과세조건	<input type="checkbox"/>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됨
계약 변경	<input type="checkbox"/> 명의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 또는 보장성 상품의 저축형 전환시부터 비과세기간(10년) 재산정

### 1. 담당 보험판매인 확인

보험판매인 이기정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박병진 님에게 설명하고, 이 확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보험판매인 이기정 (인)

### 2.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판매인 이기정 (으)로부터 보험차익세제관련 확인서를 교부받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보험계약자 박병진 (인)

친권자 \_\_\_\_\_ (인)

친권자 \_\_\_\_\_ (인)

증권번호:6697127200200

## 보험상품의 특성정보 아이콘 설명

구분	아이콘	설명
기본 특성 정보	① 예금자보호	 <p>-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퇴직보험 예외)에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p>
	② 보험 유형	 <p>-저축성보험 :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총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입니다.</p>
	③ 실적배당형 상품	 <p>-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매일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p>
	④ 청약철회 기간	 <p>-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p>
상품 질적 정보	① 원금도달 기간	 <p>-"2.25%" 수익률을 가정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도달하는 예상기간을 안내하며, 실제 수익률 변경에 따라 원금도달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p>
	② 해약환급률	 <p>-"2.25%" 수익률을 가정하였을 경우 해약환급률을 안내합니다. 실제 수익률의 변경에 따라 해약환급률은 변동됩니다.</p>
개별 특성 정보	① 변액보험 보증 옵션	 <p>-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동안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을 보증합니다.</p>

증권번호:6697127200200

## 고객님 권리보호를 위한 해피콜 실시 안내

고객님이 청약하신

(무)베리굿(Vari-Good)변액저축보험B2101(거치형)에 대해 보험업법 제95조의 2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흥국생명 콜센터에서 고객님의 연락처로 전화할 예정이오니 고객님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전화를 수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즉시콜 발신번호 : 02-2176-\*\*\*\* (흥국생명 방카콜센터 상담사 고유번호)

■ 해피콜 발신번호 : 02-1877-7006 (흥국생명 해피콜팀 상담사 고유번호)

■ 해피콜 발신일자 : 계약일 + 1영업일부터

■ 완전판매 모니터링 방법

① 흥국생명 콜센터(해피콜팀) ☎ 고객 : 월 ~ 금(09:00~18:00)

② 즉시콜 요청 :

▶ 고객 ☎ 흥국생명 콜센터(☎ 1588-2286) ☎ 콜센터(해피콜팀) ☎ 고객(청약당일도 가능)

▶ 판매인 ☎ 흥국생명 직원전용콜센터(☎ 1644-5611) ☎ 콜센터(해피콜팀) ☎ 고객

■ 상품주요사항 안내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li> <li>○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상품설명서를 전달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신 영업점 등을 통해 계약 취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li> <li>○ 보험계약 청약서에 잘못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li> </ul>
가입 목적 (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상품은 목돈 마련을 주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입니다.</li> <li>○ 가입하신 (무)베리굿(Vari-Good)변액저축보험B2101(거치형)보험은 일반펀드상품이 아니라 펀드에 투자하는 보험성상품입니다.</li> </ul>
저축성 (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상품은 가입 후 계약체결시 납입한 보험료의 836,000원이 사업비로 차감되며, 이후에도 납입보험료의 일부는 지속적으로 사업비로 차감됩니다.</li> <li>○ 이 상품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펀드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li> <li>○ 해약환급금이 총납입보험료 수준이 되려면 투자수익률이 연 -1.0%인 경우는 원금에 도달되지 않고, 연 2.25%인 경우는 2년, 연 3.375%인 경우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li> <li>○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li> </ul>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2-BB1-000010호(2022.12.08)

변액보험 펀드 설명서

(우)베리굿(Vari-Good)변액저축보험B2101(거치형)

※ 본 설명서는 변액보험 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펀드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운용설명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변액보험으로 투자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펀드 설명

채권형				
펀드설명	채권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 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국채선물, 장외파생상품 등)에 펀드순자산의 95%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펀드정보	위험등급	저위험	펀드유형	국내채권형
	주식 편입비	0%	설정일	
펀드보수(%)	특별계정 운용보수	증권거래 기타비용	기초펀드 보수비용	환해지여부
	연 0.368%	0.010%	-	해당 없음
운용수익률(%) 및 기준가(원) [기준일 : 2022.12.22]	1년	3년	5년	기준가

채권혼합형				
펀드설명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펀드순자산의 30%이내 투자하고, 채권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 증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선물 등)에 펀드 순자산의 70%내외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확보를 위한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펀드정보	위험등급	저위험	펀드유형	국내혼합형
	주식 편입비	30% 이내	설정일	
펀드보수(%)	특별계정 운용보수	증권거래 기타비용	기초펀드 보수비용	환해지여부
	연 0.438%	0.020%	0.040%	해당 없음
운용수익률(%) 및 기준가(원) [기준일 : 2022.12.22]	1년	3년	5년	기준가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펀드의 판매나 권유를 위해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되었으나 당사는 그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등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위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 당사는 직,간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자료를 고객에게 무단으로 배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를 말하며, 상기 포함된 비율을 최고한도로 하여 실제 비용이 부과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탁·결제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연도(2021.1.1~2021.12.31)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며, 체세공과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비용 산출기간이 펀드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설정일 이후의 증권거래비용 기준으로 비용을 추정치로 예시하였고, 신규 설정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펀드의 실적을 추정치로 기재하였습니다.

※ 기초펀드보수·비용: 다른 집합투자증권(기초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수 및 비용을 직전회계연도(2021.1.1~2021.12.31)의 투자비용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신규설정 펀드의 경우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펀드의 실적을 추정치로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특별계정 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기초펀드보수·비용 등 특별계정 운용비용은 해당 특별계정(펀드)적립액에서 차감되며 특별계정(펀드)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 환오픈형의 경우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유가증권 투자 시에 별도의 환해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펀드 정보의 수수료, 운용사 및 환해지 전략, 하위펀드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펀드 유형설명

펀드 유형	설명
해외주식형	해외자산에 투자하며 그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로,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또는 주식관련 파생상품)등의 편입 한도가 자산총액의 60%초과하는 펀드입니다.
해외채권형	외화자산에 투자하며 그 비중이 60%이상인 경우로, 주식이 편입되지 않고 채권 및 채권형 수익증권(또는 채권관련 파생상품)등의 최저편입비가 자산총액의 60%초과하는 펀드입니다.
국내주식형	위험자산의 주된 투자지역이 국내이며 외화자산(표시 통화가 원화가 아닌것)에 30% 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로,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또는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의 편입 한도가 자산총액의 60%초과하는 펀드입니다.

국내채권형	위험자산의 주된 투자지역이 국내이며 외화자산(표시 통화가 원화가 아닌것)에 30% 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로, 주식이 편입되지 않고 채권 및 채권형 수익증권(또는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의 최저편입비가 자산총액의 60%를 초과하는 펀드입니다.
국내혼합형	위험자산의 주된 투자지역이 국내이며 외화자산(표시 통화가 원화가 아닌것)에 30% 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로,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또는 주식관련 파생상품)등의 편입한도가 자산총액의 40%초과, 60%이하인 경우는 주식혼합형, 40%이하인 경우는 채권혼합형입니다.
해외혼합형	외화자산에 투자하며 그 비중이 60%이상인 펀드로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또는 주식관련 파생상품)등의 편입한도가 자산총액의 40%초과, 60% 이하인 경우는 주식혼합형, 40%이하인 경우는 채권혼합형입니다.
해외부동산형	외화자산에 투자하며 그 비중이 60%이상인 펀드로 주로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계약번호 : 6697127200200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 및 보험가입서류 수령 확인서

보험증권번호	6697127200200	상품명	(무)베리굿(Vari-Good)변액저축보험B2101(거치형)	계약자	박병진
--------	---------------	-----	-----------------------------------	-----	-----

보험회사는 상품판매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완전가입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고, 상품의 중요사항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보험계약에 대해 판매인이 아래 사항을 설명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확인	판매인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되었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확인	<input type="checkbox"/>
■	보험료 (적립식은 월납 보험료, 거치식은 일시납 보험료)		
■	보험상품의 종류와 주계약의 보장내용		
■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	청약철회, 품질보증, 계약무효에 관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설명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	예상 해약환급금/만기보험금 및 산출근거 (기간별 해약환급금, 원금손실가능성, 최저보증관련 사항 등)		

판매인 확인	보험판매인은 다음의 주요상품내용 설명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확인	<input type="checkbox"/>
■	가입하신 상품은 저축성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름		<input type="checkbox"/>
■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지 않고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운용됨		<input type="checkbox"/>
■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	최저보증하는 보험금과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	중도인출 시 중도인출 한도, 횟수, 인출가능 기간 및 비용공제		<input type="checkbox"/>
■	보험료 추가납입의 효과 및 비용공제		<input type="checkbox"/>
■	부당한 보험계약 소멸 또는 청약철회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계약 비교안내 실시		<input type="checkbox"/>

보험가입서류 전달/수령 (\* 보험증권은 계약성립시 지체없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험가입서류	확인	보험가입서류	확인	보험가입서류	확인
■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input type="checkbox"/>	■ 보험약관	<input type="checkbox"/>	■ 상품설명서 (핵심상품설명서 포함)	<input type="checkbox"/>
■ 운용설명서	<input type="checkbox"/>				

※ 보험약관을 모바일로 수령하신 경우 알림톡(또는 LMS문자)로 수신된 링크를 클릭하시어 약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모집인으로부터 상기 보험계약의 청약과정에서 상품의 주요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상기 보험가입서류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판매인명	(서명)	계약자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서명 법인인 경우 피보험자 서명	(서명)
------	------	-----	-------------------------------------	------

\* 계약자가 미성년자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성명하여 주십시오

\*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는 피보험자가 서명하여 주십시오.

첨부서류

- 1. 미성년자: ①미성년자기준 상세 기본증명서  
          ②미성년자기준 상세 가족증명서
- 2.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지정된 기본증명서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보험증권은 계약성립 시 지체없이 고객님의께서 선택하신 방법으로 발송하여 드릴 예정이며, 수령방법이 자택 또는 직장인 경우 수령할 주소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증권수령방법 : 우편()

증권 수령지 : \_\_\_\_\_ (자택 또는 직장 주소 자필로 입력바랍니다.)

계약번호 : 6697127200200

###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보험회사제출용)

보험계약 이동시 나이,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 계약 초기사업비 공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등의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자께서는 반드시 비교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직전 6개월 이내에 해지한 타사보험계약이 있거나, 향후 6개월 이내에 소멸 예정인 타사보험계약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오, 없습니다.

주1) 상기 답변이 모두 '예'인 경우 아래의 비교설명표(자사 승환계약의 경우 회사 자체 비교안내 시스템으로 안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설명 내용은 판매인이 작성하되 별도 설명자료 있을 경우 해당자료 첨부가능

주2) 기존계약과 실계약모집인이 동일한 경우 소멸계약이 타사보험계약이라도 비교설명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계약	비교항목	기존계약1	기존계약2
(무)베리굿(Vari-Good)변액저축보험B2101(거치형)	상품명		
62035433567307	영수증번호		
100,000,000	보험료		
일시납/일시납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종신/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가입제안서 참조)	주요 보장내용		
(가입제안서 참조)	보험금액 및 환급금		
	예정이자율 중 공시이율		
	보험목적		
(상품설명서 참조)	보험회사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 예정이자율 중 공시이율은 예정이자율로 표시

※ 주요보장내용, 보험금액 및 환급금, 보험회사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은 판매인에게 반드시 비교/설명을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설명하는 행위 금지)

본인(계약자)박병진은 기존계약 및 신규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판매인 이기정(으)로부터 상기와 같이 충분히 비교설명 받았으며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듣고 동 계약을 청약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계 약 자 서명(인)

※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대리인 서명[대표or직원]

법인계약	(법인인감)	계약자=(후견인)	친권자1	서명(인)
대리인 (대표or직원)	서명(인)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2	서명(인)

미래에셋대우

흥국생명 지점

판매인

서명(인)

흥국생명보험 귀중